

제279회 강서구의의회 임시회  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1. 4. 20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1년 4월 20일  
전문위원 최 광 호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1 - 24
- 나. 제 출 자: 강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1년 4월 6일
- 라. 회부일자: 2021년 4월 6일

## 2. 개정이유

국민체육진흥법 개정(제5조)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및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정비를 통해 강서구 체육발전과 국민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법령 개정에 맞춰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에 구청장과 강서구 체육회장을 포함한 구성인원(7명 이상 15명 이하) 조정(안 제3조)
- 나. 당연직 위원(소관업무 담당국장)을 신설함(안 제3조)
- 다. 간사 및 서기의 직책을 변경함(안 제7조)
- 라. 기타 조례 문구를 변경함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5조제1항, 제2항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: 해당없음

라. 기타

- 1) 입법예고(2021.2.2.~2021.2.22.) 결과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(기획예산과): 해당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(감사담당관)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(가족정책과): 해당없음

## 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취지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5조가 개정됨에 따라,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강서구 체육발전과 구민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- 체육진흥협의회 구성(안 제3조)
  - 구청장과 강서구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(안 제3조제1항)
  - 부의장을 위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(안 제3조제2항)
  - 당연직 위원(소관업무 담당국장) 신설(안 제3조제4항)

○ 간사와 서기의 직책 변경(안 제7조제2항)

- 간사: 행정관리국장 → 체육업무 부서장, 서기: 담당과장 → 업무담당 주사

○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

(안 제1조, 안 제2조, 안 제2조제3호, 안 제4조제2항, 안 제8조, 안 제9조)

다. 종합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5조의 개정(법률 제17580호, 2020.12.8.)에 따라, 강서구 체육 진흥 발전을 위해 설치되는 체육진흥 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

- 안 제3조(구성)와 관련하여

- 안 제3조제1항에서 “의장, 부의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” 를 “구청장, 강서구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” 으로 구성하도록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,
- 안 제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는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협의회 구성 참여위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,
- 안 제3조제4항에서는 소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협의회 운영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음.

- 안 제4조(위원의 임기)제2항 “잔임기간” 의 용어정비와 관련해서 조문의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 “임기의 남은 기간” 은 “남은 임기” 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,

- 안 제7조(간사와 서기)에서는

- 직책에 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협의회 운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간사와 서기를 각각 “행정관리국장에서 구 체육업무 부서장, 담당과장에서 업무담당 주사” 로 변경하였음.

- 안 제1조, 안 제2조, 안 제2조제3호, 안 제4조제2항, 안 제8조, 안 제9조는

- 용어와 표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음.

○ 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(법률 제17580호, 2020.12.8.)에 따라 체육진흥에 필요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것이지만, 안 제3조(구성)제1항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1(지역 체육진흥협의회) 시행이 2021.6.9.일부터이므로

- 부칙에서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” 를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제1항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” 로 수정하여야 할 것임.

---

1) **제5조(지역체육진흥협의회)**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 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0. 12. 8.>

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0. 12. 8.>

[시행일 : 2021. 6. 9.] 제5조

**□ 국민체육진흥법**

제5조(지역체육진흥협의회)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0. 12. 8.>

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0. 12. 8.>